

기술의 발전과 납세자 권리 - 가상자산, NFT와 기부세제 -

2023. 4.

김 완 용

(숭의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, 세무학 박사)

목 차

I. 서론

II. 가상자산 기부의 의의와 특수성

III. 우리나라 가상자산 관련 기부세제

IV. 주요국의 가상자산 관련 기부세제

V. 정책적 시사점

I. 서론

1.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

- **(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기부문화)** 가상자산, NFT 등 다양한 자산이 생겨나고 있음
 -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AI 등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**새로운 디지털 자산**이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는 현실
 - 이러한 새로운 자산을 기부하는 경우에 대한 **세법적 지원**은 정당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

- **(기부의 새로운 형태와 관련 세제)**
 - 전통적인 현금 기부에서 **비현금성 자산의 기부**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
 - 우리 세법은 **현금 기부를 전제**로 하고, **비현금성 자산의 기부**에 대해서 **불확실성**을 내포하고 있음
 - 관련 세제의 미비로 인하여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 모두에게 **예측하지 못한 장애요인**이 될 수 있는 문제점

II. 가상자산 기부의 의의와 특수성

1. 비현금성 자산 기부의 의의

□ 비현금성 기부의 의의

- 비현금성 자산 : 환금성이 낮아 '교환의 매개수단(통화) 이 되지 못하는 자산', 부동산, 주식, 가상자산 등
 - '기부'의 사전적 정의 : '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는 행위'
 - 반대급부를 전제하지 않음 : 기부금을 제공한 자는 특정한 반대급부를 요하지 않고 기부함
 - 무상으로 제공 : 대가 없이 자산을 기부함
 - 재산적 가치의 증여 :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기부함
- 세법상 기부금은 이러한 기부의 특성에 따라서, "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(특수관계 없는 자에게)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" 으로 정의됨
 - 비현금성 자산 기부 : '교환의 매개수단이 아닌 자산' 을 기부하는 행위
 - 법령상 "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라고 표현(현물기부금)
 - 현금성 자산기부와의 차이 : **현금화에 대한 부담, 자산의 평가 문제**

II. 가상자산 기부의 의의와 특수성

2. 가상자산의 의의

□ 가상자산의 개념

○ 가상자산의 정의는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음

- 가상자산이란 '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(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)'를 말함(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3호)
- 가상자산의 정의는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고, 용어 사용에 있어서 통일적인 기준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됨
 - 예상치 못한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어떤 특정적인 것만이 가상자산이라고 단정 지어서 말할 수 없기 때문
- 결국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따라서 그 개념이 정립될 수 있음
 - 가상화폐 대부분은 그 동안 가치가 급격히 변동하는 모습을 보였으며, **변동성의 정도도 매우 크게** 나타나고 있음
 - 가상화폐의 이러한 과도한 변동성은 가상화폐라는 명칭과 달리 가상화폐가 **자산**, 그것도 **위험이 매우 큰 자산**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
 - 대법원은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'**무형의 재산**'으로 인정하고 몰수의 대상이라 판단하기도 함(대판 2018.5.30., 2018도3619)

II. 가상자산 기부의 의의와 특수성

3. 가상자산 기부의 특수성

□ 가상자산의 높은 변동성

- 가상화폐를 기부 받는 경우, 기부 받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기부금의 가치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는 문제가 존재
 - 하루에도 시간단위가 아닌 몇 분만에 가격이 급등락하는 모습으로 인하여 담당자의 현금화 시점에 대한 판단 및 부담이 굉장함
 - 가치 변동 위험에 따라서 **현금화 시점에 대한 이슈**가 발생하게 됨
- 가상자산을 상속·증여받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와 관계없이 이전부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2022년부터 평가액 산정 방법이 변경되었음
 - 증여일(평가기준일) 전·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
 - 세법상 평가액과 공익단체에서 처분한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
- 가상자산의 가장 큰 장점으로 제기되는 '투명성'으로 인하여 기부에 활용 시 기대감이 존재
 - 하지만, 이는 가상자산 자체가 지니고 있는 특성일 뿐,
 - 가상자산을 기부받아 현금화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투명성이라는 특성은 사라지게 됨

II. 가상자산 기부의 의의와 특수성

3. 가상자산 기부의 특수성

□ 가상자산의 분류

-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가상자산을 **보유 목적에 따라 재고자산** 혹은 **무형자산**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, 가상자산의 매도와 관련한 명확한 회계처리 기준은 없는 상황
 - 공정가치로 평가하되,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평가이익과 손실을 인식하고, 무형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평가이익과 손실을 인식하지 않음
 - 최근에는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보자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
- NFT는 그 유형에 따라서 **가상자산(무형자산)**으로 분류될 수도, **미술품(유형자산)**으로 분류될 수도 있음
 - 그 분류에 따라서 평가방식이 달라지는 문제 발생 가능
- 가상자산 양도·대여로 발생하는 소득(기타소득)에 대해서는 과세시행이 2025.1.1. 이후로 연기되었음
 - [국세청,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\(nts.go.kr\)](https://www.nts.go.kr)
<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mi=40370&cntntslid=238935>

III.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관련 기부세제

1. 기부관련 소득세제

□ 기부자 유형별 비현금성 자산의 평가 규정

○ 비현금성 자산 기부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을 이루는 규정은 해당 비현금성 자산의 평가와 관련된 규정

| 기부자 | 기부단체 유형 | | 기부자 (기부금영수증) (법령 제36조, 소득령 제81조 제3항) | 수령자 (공익법인) (법인세법상 취득가액) (법령 제72조) | 수령자 (공익법인) (회계상 취득가액) (공익법인회계기준 제26조)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|---|---|
| 법인 | 특례기부금 <구> 법정기부금 | | 장부가액 | 장부가액 | 공정가치 |
| | 일반기부금 <구> 지정기부금 | 특수관계 x | | | |
| | | 특수관계 o | | | |
| 개인 | 특례기부금 <구> 법정기부금 | | Max (시가, 장부가) | 장부가액*1 | 공정가치 |
| | 일반기부금 <구> 지정기부금 | 특수관계 x | | | |
| | | 특수관계 o | | | |

1) 사업소득과 관련 없는 자산은 취득가액

- 현물을 기부 받는 경우 공익법인 입장에서는 기부자에게 발행하는 기부금 영수증상의 발행금액과 회계상 인식하는 기부금수익,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이 모두 다른 문제가 발생함

III.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관련 기부세제

2. 기부관련 소비세제

□ 기부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

○ 현물기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해당 기부금을 기부한 단체가 어딘지에 따라 결정됨

- 부가가치세법에 정하여진 '국가, 지방자치단체, 지방자치단체조합 및 **공익단체**'에게 기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, 그 외의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간주공급(사업상 증여)에 해당되어 과세됨

□ 기부물품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

○ 개별소비세법상 기부물품에 따른 특별한 규정은 따로 없으며 다만, 다음의 2가지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 규정을 두고 있음

- 외국의 자선 또는 구호기관·단체에 기증하는 물품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물품
- 부가가치세법상에서는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증대상에 '**공익단체**'가 포함되어 있으나, 개별소비세법에서는 **포함되지 않은 실정**

III.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관련 기부세제

3. 기부관련 재산세제

□ 현물기부의 상증세법상 취급

- 기부를 한 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여부에 따라서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서 일정 요건(공익성)을 갖춘 단체에 대한 **기부에 대한 세제혜택**을 주고 있음
- 기부 받는 자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 받았기 때문에 **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임**
 -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2조에서는 상속세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음
 -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**공공단체**에 유증(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, 이하 “유증 등”이라 한다)한 재산
 -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**공공단체**에 증여한 재산
 - 동법 제46조에서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을 규정하고 있음
 -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**공공단체**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
 - 상증세를 비과세하는 경우 이외에도,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계산구조상 과세액에 불산입하는 혜택을 부여한 뒤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도 존재함

III.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관련 기부세제

3. 기부관련 재산세제

□ 현물기부의 지방세법상 취급

- 「지방세법」에서는 취득세, 등록면허세, 주민세,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,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다른 세법과 달리 공익단체 등도 원칙적으로 지방세 납세의무를 지게 됨
- 하지만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22조에서는,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지원대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(**사회복지법인 등**)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(제1항)와 재산세(제2항)를,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(제3항) 및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(제5항)를,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(제3항), 사회복지시설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회복지시설 사업장에 과세되는 주민세 사업소분(제5항)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- 다만,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**추징함**
 -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
 -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
 -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·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

IV. 주요국의 가상자산 관련 기부세제

1. 미국

▣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

- 미국은 포괄주의 과세방식으로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가상화폐에 대하여 별도의 입법을 하지 않고 자본이득으로 과세함

▣ 가상자산에 대한 기부금의 처리

- 미국의 경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가상자산에 대하여 국세청 지침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음
 - 가상자산을 적법한 자본으로 보아 해당 가상자산의 가치상승으로 인하여 증가된 경제적 가치를 자본이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
- 그렇다면 가상자산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부행위에 대해서도 주식 등 다른 자본이득세 과세대상들과 마찬가지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
 -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자본이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부할 경우에도 기부금 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

IV. 주요국의 가상자산 관련 기부세제

2. 일본

▣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

○ 일본은 가상자산에 대하여 지급결제수단 또는 금융상품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음

- 가상자산을 매각 또는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소득 등 각종 소득에 기인되는 행위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잡소득으로 구분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써 징수하게 됨
- 사업상 필요에 의해 가상자산을 거래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세가 부과됨
- 만약 가상자산을 채굴 등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취득시점의 가상자산에 대한 시가에서 채굴 등에 따라 발생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잡소득으로 보아 과세함
- 만약 사업과 관련하여 채굴 등 행위를 통해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봄

IV. 주요국의 가상자산 관련 기부세제

2. 일본

□ 가상자산에 대한 기부금 처리

- 일본의 경우 가상자산의 기부금 공제제도와 같은 조세혜택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음
- 2019년 당시 일본 총무상이었던 다카이치 사나에는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의 기부는 합법이라고 언급
 - 일본 가상화폐거래소 비트플라이어의 일본적십자사 기부
 - 일반적인 금전의 기부는 세금공제 대상이 되나 비트코인을 통한 기부는 세금공제 대상이 되지 못함
 - 바이낸스의 서일본 호우 재해지역 기부 사례
 - 거래소가 직접 가상통화를 환전하여 기부함
- 가상자산에 대하여 합법적 결제수단으로써 인정되고 있으나 기부에 대한 법령의 허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

IV. 주요국의 가상자산 관련 기부세제

3. 영국

▣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

○ 영국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등의 과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

- 이를 대신하여 2018년 개인의 가상자산 취득, 보유 및 양도에 관한 조세처리 방법을 정한 국세청 정책보고서를 발간함
- 영국의 경우 가상자산 등을 디지털자산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무형자산으로 보아 개인이 가상자산 등을 거래할 경우 자본이득세로 과세하고 있음

▣ 가상자산에 대한 기부금 공제제도

○ 영국의 경우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을 화폐로 간주하지 않고 있음

- 따라서 세금감면을 위한 기부금으로써 활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
- 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을 화폐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기부금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

IV. 주요국의 가상자산 관련 기부세제

4. 시사점

- 가상자산을 통한 기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, 미국의 경우 과세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과세 및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음
 - 미국은 포괄주의로 과세함에 따라 **가상자산의 가치 증가분을 자본이득으로 과세**하며, 이에 가상자산을 기부할 경우에도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함
 - 영국은 가상자산을 디지털자산과 동일하게 **무형자산으로 인식하여 자본이득에 과세**하고 있으며, 법정화 폐가 아니므로 Gift Aid 방식의 기부는 인정되지 않음
 -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기부와 같이 가상자산 기부에 따라 양도소득세나 상속세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가능성은 존재하나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, 현재 관련 규정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됨
 - 일본은 가상자산을 사업관련성 여부에 따라서 **사업소득 또는 잡소득으로 과세**하고 있으며, 가상자산의 기부금 공제제도와 같은 세제혜택 관련 명확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음

IV. 주요국의 가상자산 관련 기부세제

4. 시사점

- 특히, 부동산이나 증권 등의 비현금성 자산의 기부에 있어 조세회피 등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는데, 가상자산 기부도 자선단체를 도관으로만 활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상자산 기부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

| 구분 | | 미국 | 일본 | 영국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비현금성 자산 기부시 세제혜택 존재 | | ○ | 일부 존재 | ○ |
| 평가방식 | 부동산 | 감정평가/유사 부동산의 판매가격과 비교 | 시가 | 시장가치 / 전문가 자문 필요 |
| | 미술품 등 | 감정평가 | - | - |
| | 주식 또는 채권 | 평가일 기준 공정시장가치 | 시가 | 주식에 따라 다름 |
| 가상자산 기부 | 과세방식 | 자본이득 과세 | 금융자산 | 자본이득 과세 |
| | 세제혜택 | 비현금성 자산과 동일 | - | 명시된 규정 없음 |

V. 정책적 시사점

1. 가상자산 기부의 문제점

□ 가상자산의 시가변동에 따른 기부금액 산정 어려움의 문제

○ 가상자산 기부에 대한 최대 단점은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임

-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은 수시로 큰 폭의 가격변동성을 가짐
- 따라서 기부시점과 환전시점의 차이로 인해 기부금액이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음
- 펜실베이니아대에 비트코인을 통한 기부 사례 : 비트코인이 30% 이상 폭락한 바로 다음날 기부가 이루어짐. 만약 해당 비트코인이 폭락 이전에 기부되었을 경우 500만 달러보다 더 많은 금액이 기부될 수 있었음.
- 위믹스 기부 사례 : 위믹스가 2022.12.8. 상장폐지되면서 위믹스로 기부금을 받은 국내 주요 대학과 단체들이 난감해진 상황이 발생함
-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변동성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즉시 현금화하는 것이 기준이 되고 실제로 사례에서 확인해볼 수 있듯이 대부분은 즉시 매각 후 현금화하고 있음

○ 이러한 가격의 변동성에 대하여 비영리단체에는 자산관리에 대하여 보수적이나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 자선단체와는 잘 맞지 않는다고 지적됨

- 비영리단체들은 대부분 가상자산으로 기부 받았을 경우 이를 즉시 현금화하여 활용
- 가격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 하고자 기부 받는 즉시 현금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고유목적사업을 진행함

V. 정책적 시사점

1. 가상자산 기부의 문제점

□ 가상자산 기부금 수령 및 수수료 등 비용 발생의 문제

○ 가상자산을 기부 받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을 기부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야 함

- 만약 플랫폼을 통하지 않을 경우 직접 가상화폐 등을 수령할 수 있는 지갑을 만들어 해당 지갑으로 직접 기부 받는 방법을 선택해야 함
- 지갑으로 직접 기부를 받는다 해도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거래소를 통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므로 기부를 받고 처분하는 데에 대한 복잡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
- 최근 블록체인 기반의 모금 플랫폼의 대표적인 사례는 '해피빈' 또는 '카카오같이가치' 등이 있음
- 그 외에 BC카드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, 이포넷이 합작하여 카드와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기부플랫폼 '체리'가 있음
- 그리고 기브어클락, 희망브리지가 만든 희망브리지 마크 디앱 등이 있음

V. 정책적 시사점

1. 가상자산 기부 문제점

□ 가상자산 기부금 수령 및 수수료 등 비용 발생의 문제

- 우리나라에 가상화폐 거래소는 업비트, 빗썸, 코빗 등이 있으며, 대부분의 가상화폐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해야 함
 - 공익단체 등이 블록체인 기술 등이 활용된 가상자산을 기부 받을 경우 가상화폐 등을 수령할 수 있는 지갑을 우선 만들어야 하는데, 이 지갑은 가상화폐를 보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개설해야 함
 - 가상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며,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**거래소의 수수료가 발생**하게 됨
 - 물론 일부 사례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기부를 진행하면서 가상자산 지갑의 개설 및 수수료 없이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돕는 사례가 있긴 했으나, 가상자산을 기부 받는 경우 대부분은 현금화를 위해서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함
 - 공익목적 사업에 이용하기 위해 기부를 받았음에도 수수료 등 **관련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**에 대한 문제가 발생함
 -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부자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지만, 기부자 또는 기부 받는 단체 모두에게 이러한 비용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음
 - 따라서 이러한 비용의 문제도 **해결해야 할 숙제**로 인식해야 함

V. 정책적 시사점

1. 가상자산 기부 문제점

□ 법인세법상 가상자산을 기부받은 공익법인의 과세여부

- 법인세법에서는 순자산증가설에 따른 과세가 세법개정 없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법리인데, 가상자산을 '무형자산'으로 볼 것인지 '금융상품'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게 됨
- 공익법인의 경우 순자산증가설이 아닌 **열거된 수익사업에 한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방식**으로 규정되어 있음
 - 개인소득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**무형자산**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입법을 통하여 결정한 상태(25년부터 과세)
 - 현행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는 '가상자산소득'이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**과세할 근거가 없음**
 - 따라서, 현행 법인세법 체계하에서 수익사업으로 미열거된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는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
 - 결국 우리나라 세법에서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취급하면 열거주의에 따라서 **공익법인이 기부받은 가상자산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것**
 - 다만, 향후 관련 법체계가 바뀌거나 '금융상품'으로 보아 과세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음

V. 정책적 시사점

2. 현물기부금 개선방안

□ 세법상 현물기부금 평가제도의 개선방안

-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수령한 현물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도 “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”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여 영수증상의 금액과 기부자의 공제대상 금액 및 공익법인의 취득원가를 일치시킨다면 실무상 명확한 지침이 될 것
- 기부자가 개인인 경우에, 장부 기장 유무와 사업소득 유무에 따라서 평가방식이 달라지는 입법적 미비가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 중 장부를 기장하고 있어 장부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과 마찬가지로 장부가액으로 현물기부금을 평가하도록 하고, 기부 받는 공익법인의 경우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기부받는 경우에는 기부자와 마찬가지로 “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”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면 될 것임

V. 정책적 시사점

2. 현물기부금 개선방안

□ 세법상 현물기부금 평가제도의 개선 (안)

| 기부자 | 기부단체 유형 | | 기부자 (기부금영수증) (법법령 제36조, 소득령 제81조 제3항) | 수령자 (공익법인) (법인세법상 취득가액) (법법령 제72조)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|--|
| 법인 | 특례기부금 <구> 법정기부금 | | 장부가액 | 장부가액 |
| | 일반기부금 <구> 지정기부금 | 특수관계 x | 장부가액 | 장부가액 |
| | | 특수관계 o | Max (시가, 장부가) | Max (시가, 장부가) |
| 개인 | 특례기부금 <구> 법정기부금 | | 장부가액^{*1} | 장부가액 ^{*1} |
| | 일반기부금 <구> 지정기부금 | 특수관계 x | 장부가액^{*1} | 장부가액 ^{*1} |
| | | 특수관계 o | Max (시가, 장부가) | Max (시가, 장부가) |

1) 사업소득과 관련 없는 자산은 취득가액으로 하되, 그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로 함

V. 정책적 시사점

3. 결론

- 우리나라도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기부에 대한 조세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, 특히 비현금성 자산에 대한 세제지원 마련을 통해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고, 자선단체의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함
 - 비현금성으로 분류되는 자산이 많고, 최근에는 가상자산 등 신종자산이 등장하여 평가의 어려움이 있으므로, 법 또는 규정을 통해 비현금성 자산별 **평가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**가 있음
 - 미국이나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비현금성 자산별 평가기준을 정립하고
 - 자선단체가 기부를 받았을 경우 즉시 처분 또는 보유 후 처분할 수 있는데, 이에 대한 **각각의 관리 및 처분 지침을 명문화**할 수 있음
 - 영국 등과 같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비현금성 자산에 대한 세제혜택을 악용하여 조세회피 등 부정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 같이 마련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임

감사합니다.